

의안번호	2219074
의 퇴 인	김용태의원
회 답 일	2026.08.04.
추계번호	26C2733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0조제7항 신설 (안전조치 및 안전사고관리 지침 등)	교육감은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학교장등에게 법률 및 심리 상담, 소송 지원 등을 제공할 수 있다(제7항).	재량규정
2	안 제10조의5 신설 (학교 밖 교육활동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교육감은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 밖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학교 밖 교육활동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제1항).	재량규정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제2항). 1. 학교 밖 교육활동 운영 관련 컨설팅 및 매뉴얼 작성 지원 2. 보조인력 명부 작성·관리, 인솔교사 및 보조인력에 대한 교육·연수 3. 사전답사 지원 및 안전점검 자문 4. 학교 밖 교육활동 중 사고 발생 시 분쟁조정, 법률 및 심리 상담 등 지원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업무	의무규정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제3항).	

II. 미첨부 근거규정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10조제7항 신설 (안전조치 및 안전사고관리 지침 등)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안 제10조의5 신설 (학교 밖 교육활동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2. 상세 사유

□ 개정안은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교육감이 학교장 등에게 법률·심리 상담 및 소송 지원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학교 밖 교육활동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현행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1조¹⁾ 및 제22조²⁾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은 법률지원단을 운영하는 한편, 교육활동으로 발생한 민·형사소송비용 지원, 분쟁조정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공제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참고자료] 「교원보호공제 표준약관」 주요내용

□ (안 제10조제7항) 개정안 시행으로 교육감이 법률·심리 상담 및 소송 지원을 제공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그러나, 현재 상술한 바와 같이 시·도교육청 단위의 법률 지원 사업이 운영 중이고, 소송대응 강화 및 보상액 확대 등 향후 교육부의 지원 확대가 예정되어 있으며, 개정안의 문구만으로 지원 대상의 선정 기준, 구체적인 지원 범위 및 단가 등을 산정하기 곤란하여 추계에 한계가 있음
 - － 참고로, 교육부는 현행 사후적 지원 체계를 개선하여 사안 발생 시부터 변호사 선임 및 소송대응을 지원하고, 실질적인 보상·배상 지원을 위해 교원보호공제사업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임³⁾

1)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1조(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① 교육감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또는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교원에게 법률 상담을 제공하기 위하여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가 포함된 법률지원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 또는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2조(교원보호공제사업) ① 교육감은 교육활동과 관련된 각종 분쟁이나 소송 등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이하 “교원보호공제사업”이라 한다)을 운영·관리할 수 있다.

② 교원보호공제사업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 교원의 교육활동으로 발생한 손해배상금의 지원 및 구상권 행사 지원(교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발생한 상해·상담·심리치료 비용 지원(상담·심리치료 비용 지원의 경우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하여 병가 또는 휴직을 사용한 이후 직무에 복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교원이 위협을 받는 경우 보호 서비스 지원

3.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법률적 분쟁에 대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소송비용의 지원

③·④ (생략)

3) 교육부,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 (2026.05.28.), 7p

- (안 제10조의5) 개정안에 따라 교육감이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 컨설팅, 보조인력 관리, 사전답사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센터 운영비 등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그러나, 현재 교육부, 교육(지원)청, 개별 학교 및 공제회 등이 개정안에 명시된 지원센터의 업무를 개별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⁴⁾,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이 조례에 위임되어 조직 규모 및 운영비 등을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이에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정현수	문지은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정현수	02-6788-4627	jhs@assembly.go.kr

4) 구체적으로, ①운영 컨설팅 및 매뉴얼 작성 지원(교육부), ②보조인력 명부 작성·관리 및 교육·연수(교육지원청), ③사전답사 지원 및 안전점검 자문(개별 학교), ④사고 발생 시 분쟁조정, 법률 및 심리 상담 등 지원(시·도교육청 및 공제회) 등임

[참고자료] 「교원보호공제 표준약관」 주요내용

구분	보상내용	공제금 지급한도
배상책임	· 교육활동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민사상 합의금 포함)	· 사고당 2억원 (소 제기전 합의 시 사고당 1억원)
민·형사상 소송비용	· 학생·학부모 등과의 법률적 분쟁의 민·형사 소송 비용(소제기 포함)	· 심급별 660만원 · 수사단계 330만원
상해치료비· 심리상담비	· 치료 및 요양비 · 심리상담비	· 치료·요양비: 사고당 200만원 · 심리상담: 15회
재산상 피해비용	· 휴대폰 훼손 등 비용	· 사고당 100만원
위협대처서비스	· 폭행·상해 등 중대사안 시 긴급 경호	· 사고당 20일
분쟁조정서비스	· 분쟁사안 시 변호사 또는 공제회 담당자 등의 분쟁조정 서비스	· 한도 없음

자료: 교육부 제출